

수원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711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711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가단53147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배용선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식

변론종결 2023. 3. 17.

판결선고 2023. 4.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가단53147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4,620,375원의 한도 내에서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예비적으로,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83,500,2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3,500,2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주위적 · 예비적 청구를 확장 또는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제3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 2) “이 법원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가 의사표시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증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나) B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원고도 해당 증여계약서(갑 제10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증여계약서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증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 및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다) 갑 제3, 4, 10, 2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271,000,000원(= 120,000,000원 + 50,000,000원 + 16,000,000원 + 35,000,000원 + 50,000,000원)에 이르렀던 사실, 2019년경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면적(84.24㎡)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1억 6,000만 원 또는 1억 8,000만 원이었던 사실, 위 증여계약서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없는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 B와 피고가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나 갑 제12~16호증, 을나 제1~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1) B는 피고의 부친인 K이 운영하던 L를 물려받아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B가 다른 사업을 시도하면서 피고가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B가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B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L의 경영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생기면서 피고가 L의 경영에서 배제되었다.

(2) B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B가 위와 같은 갈등을 겪던 중인 2017년 초경 집을 나감으로써 서로 별거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그 이후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 중 K과 M(개명전 이름: J)은 각각

피고의 부친과 자매이다. K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8. 12. 30.경 사망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K의 상속인들(N, O, P, 피고, M, Q)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K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만 원)에 관하여 K의 사망 이전에 이미 해지되었던 것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대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B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이미 M에게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M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500만 원)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75,679,625원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B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피고는 나머지 근저당권자인 R, I에게도 직접 연락하였고, R의 경우 아무런 대가 없이, I의 경우 200만 원을 변제받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5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저당권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피고의 가족이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말소등기가 마쳐지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상당 부분 채무가 변제된 상태였거나 근저당권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소액의 변제만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므로, B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고려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B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생긴 시기와 그 경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적하는 일부 사실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 3) ”본안에 관한 판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에게 2016. 4. 4. 2,940만 원, 2016. 6. 27. 940만 원, 2017. 6. 22. 2,000만 원, 2018. 1. 15.부터 2018. 4. 6.까지 합계 5,750만 원 등 총 1억 1,6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B는 2018. 2. 13.부터 2019. 1. 23.까지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가 2019.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B 사이의 상호 송금 시기와 액수, 원고의 B에 대한 총 송금액에서 B의 원고에 대한 총 송금액을 뺀 액수와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액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점, 원고가 2018. 4. 6. 이후로는 B에게 추가로 송금한 내역이 없어 원고와 B가 별도의 대여금을 토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B는 그동안의 상호 송금에 따른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정산의 대상이 된 채권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6. 4. 4.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발생·소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이 2019. 3. 12.이고 해당 계약서에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와 피고가 실제 협의이혼신고를 한 날은 2020. 5.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B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앞서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 살펴본 바와 같은, B와 피고 사이의 갈등과 이혼에 이른 경위, 즉 B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부터 이미 별거 상태에 이르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고 피고는 그 이전부터 이혼 성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던 점, B가 피고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았고 피고도 상당 기간 직접 해당 사업을 경영하였으며 B가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한 바 있으므로 아무런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B와 피고가 협의이혼 당시에 별도의 재산분할 약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원고의 주장대로 7,600만 원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B와 피고의 이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진, 판사 전용수, 판사 박수미